

부산고등법원 2018. 7. 12 선고 2018나52399 판결 [매매대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 2018. 7. 12 선고 2018나5239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6가합4511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

변론 종결 2018. 6. 14.

판결 선고 2018. 7. 12.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6가합4511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9.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2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9.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기재 주식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가 주위적으로 주장하는 공익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원고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이하 '원고의 회생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게 되는데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 당시 원고의 회생채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를 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고 신고기간의 말일까지

목록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또는 정정을 위한 신청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에게 채권신고 통지도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회생채권의 실권을 초래한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는 그 배상으로서 금전 또는 피고 소유 주식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당시 회생채권자목록 작성 업무 등을 담당한 관리인 E 개인이지 채무자 회사가 아니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한 공익채권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같은 법 제56조 제1항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는 관리인이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에 기하여 갖는 청구권뿐만이 아니라, 관리인이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의·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타인이 가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인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과 같이 설령 회생채권자목록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가 관리인 E이었다 하더라도 관리인 E이 회생채무자인 채무자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하여 회생채권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채권은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부담해야 하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지만(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바(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나아가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그 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되어 회생채권의 신고를 통해 권리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회생채권이 실권된 경우에는,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한 잘못과 회생채권의 실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관리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94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위 G은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무렵 원고의 대표이사 등과 만나 채무자 회사의 회생과 관련해서 D 부동산 매각 관계 때문에 의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최소한 2013년경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고가 그 회생채권을 신고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어 원고의 회생채권은 실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이 회생채권자목록에 원고가 주장하는 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회생채권의 실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채권신고 안내통지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해태하고서 그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되어 회생채권의

신고를 통해 권리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회생채권이
실권된 것이고 피고가 이를 주장한다고 하여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형배

판사김낙형

판사박현진

별지